

제813호

무주 공보

2026. 6. 17.(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무주군 공고 제2026 - 717호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문구와 사업 추진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화

나.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문구 수정과 정의 내용 보완(안 제2조)

-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정의 보완 및 “서식지” 정의 추가

다. 서식지 보호사업을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시행의 근거 마련(안 제5조)

-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도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55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 전자우편: bioagr@korea.kr
- 팩스: 063-320-5697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063-320-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말한다.
2.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반딧불이가 집단 서식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서식지”란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을 말한다.

제3조(서식지 보호) ① 군수와 군민은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서식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이용 및 개발

2. 서식지의 오염 및 훼손 방지와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 노력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3. 서식지 보호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감시·복원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교란 동식물 관리 사업
5. 환경오염 예방 등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반딧불이 보호·연구·교육·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서식지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딧불이 서식 현황 및 생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 - 718호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목적 및 규정의 범위를 간결하게 하고, 연구소 설치 근거의 명문화와 조항 체계를 비롯한 알기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행정기구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규정의 범위 간결화(안 제1조)

- 기존 목적 조항에 혼재되어 있던 선언적 의미 정비

나. 연구소 설치 근거의 명문화(안 제2조)

- 단순 위치규정을 넘어 연구소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여 정당성 확보

다.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조항체계 등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55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 전자우편: bioagr@korea.kr
- 팩스: 063-320-5697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063-320-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붙임 1)

조례 제 호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는 반딧불이의 보전·증식 및 생태교육을 위하여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에 둔다.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딧불이 보전·증식에 관한 연구
2.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 지원
3.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는 소관 부서장이 총괄하며,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반딧불이 증식 및 방사

4. 그 밖에 연구소 관련 업무

② 연구소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은 무주군민을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딧불이 생태교육은 연중 실시하되,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집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연구소는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시에만 개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연구소 이용자는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참여 시 운영요원의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물 또는 생물자원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